
과업지시서

[KIND 국·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용역]

2024. 1.



I 추진배경

- KIND 설립 이후 5년간 사업 영역 확대 및 역할 강화에 따라, 신규 발생한 정보의 효율적 노출을 위해 체계적인 재정비 추진
- 전 세계적인 인프라·도시개발 수요 증가 및 투자개발형(PPP) 사업 발주 증가 등 경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,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KIND의 이미지 구축
- 국·영문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(Q&A, KIND 소식 등) 최신화
- 수년간 홈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, 노후화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편
- 공사 주요 사업 및 역할, 프로젝트 및 투자 현황 정보 미흡, 직관적 구성 부족 등으로 구성 및 콘텐츠의 개편 요구 있음
- 콘텐츠 강화를 통한 기관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

II 과업개요

- 가. 과업명 : KIND 국·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용역
- 나.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.12.31.까지
- 다. 사업예산 : 일금삼천오백만원정(₩35,000,000) (VAT 포함)
- 라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III 과업범위

가. 홈페이지 구성 체계화 및 내용 고도화

1) 내용 및 기능 체계화

- 메뉴 구성 재구성 및 기능 추가(주요사업, 투자실적, 해외센터 등)를 통해 풍부한 기관 정보 제공

2) 정보(콘텐츠) 최신화 및 고도화

- 주요사업, 투자실적, 프로젝트 정보 등 콘텐츠 강화

나. 홈페이지 디자인 및 가독성 개편

- 1) 화면 디자인 및 UI/UX 재설계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
- 2)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UI/UX를 적용한 화면 레이아웃 설계
- 3) 공사의 역할과 혁신노력이 표현되도록 영상, 모션 등 디지털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이미지 컨셉 설정·구현

다. 영문 홈페이지 기능 및 콘텐츠 강화

- 1) 영문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메인 화면 등 개편
- 2) 영문 홈페이지의 누락된 기본 정보 및 기능 추가
 - 국문 홈페이지의 일부 메뉴(해외사무소, 연혁 등) 영문화하여 추가 콘텐츠 구성
 - ※ 기존 국문 홈페이지 콘텐츠 외의 내용이라도 영문 홈페이지 내실화에 필요할 경우 별도 콘텐츠 추가적으로 구성

라.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개선

- 1) 전자북 시스템 도입
 - PPP 가이드북, 브로슈어, 뉴스레터 등을 전자북 형태로 구현
- 2) 홈페이지 오류 파악 및 수정(수시) 등
- 3) 관리자 페이지(CMS) 리뉴얼 및 고도화

마. 홈페이지 유지보수(상시)

- 1) 메뉴신설, 콘텐츠 변경, 배너 제작 등 부서별 요청사항 지원
- 2) 접속장애 및 에러 발생시 즉시 원인파악 후 수정 조치
- 3) 대표 이미지, 메뉴 이미지 등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제작
- 4) 보안취약점 지적요소 즉시 수정
- 5) 매월 결과 보고서 제출
- 6)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서버 모니터링 및 점검

IV 과업 수행 일정

가. 착수보고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

- 보고 내용
 - 용역수행계획 보고 및 홈페이지 개편 기획 협의
- 보고 방법 : 착수보고서 서면 제출 / 착수보고회 개최

나. 중간보고 : 계약일로부터 16주(4개월)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의 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
- 보고 방법 : 과업수행에 따른 기본조사 및 검토결과 토대로 중간 보고회 개최 및 공사 임직원 의견 추가 반영 추진

다. 최종보고 : 계약일로부터 24주(6개월) 이내

- 보고 내용 :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
- 보고 방법 :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준공 전 최종 과업성과를 시연 중심으로 보고 및 임직원 의견 추가 반영 추진

라. 성과품 작성 및 제출

-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계약종료일 이전 최종 산출물 제출(한글 및 PDF 형태)
- 신규 홈페이지 시연

바. 추진일정

추진내용	'24.1분기	'24.2분기	'24.3분기	'24.4분기
① 내부 의견수렴 및 타기관 우수사례 조사	■			
② 홈페이지 개편 용역계획 수립	■			
③ 용역 발주, 낙찰자 선정, 착수보고		■		
④ 홈페이지 개편		■	■	
⑤ 중간보고회		■		
⑥ 최종보고회			■	
⑦ 홈페이지 유지관리			■	■

※ 추진일정은 내·외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IV 과업 수행 지침

가. 일반사항

- 1) 용역수행자가 개발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하 공사)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을 위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에서 사용하는 중에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고,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,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.
 - 2)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,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최종산출물에 반영해야 한다.
 - 3)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,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양자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되 공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 - 4)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분석자료, 영상,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일체는 공사가 소유하며, 공사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으나 용역이 끝난 뒤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다. 또한, 용역수행자가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성과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.
 - 5)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, 부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·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6)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.
- 공사에서 제공된 모든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유출금지 등 보호방안 강구

-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률(민·형사)상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명시하는 보안각서 제출

7)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사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공사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8) 공사와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,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

1)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.

2) (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) 본 사업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() 개최 또는 () 미개최한 사업이다. (간소화 과업심의 개최 및 승인 완료)

3) (과업내용 변경) 본 사업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,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,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.

다. 하도급 허용

1) (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)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야 하고,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

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- 2) (하도급 사전승인)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1조제5항 및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) (하도급 비율제한)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(상용소프트웨어 포함)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4) (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)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의 별지 제7호서식 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(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‘하도급계획적정성’ 평가를 하는 경우)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‘하도급계획적정성’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「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」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한다.
- 6) (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)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의 별표 3 [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]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,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. 다만,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.
- 7) (공동수급체 구성)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%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

해야하며,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라. 작업장소

- 1) (작업장소 상호협약)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(장소, 설비, 기타 작업환경)을 상호협약하여 결정하며,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,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약하여 결정한다.
 -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,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. (단,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다.)
- 2) (원격개발 장소 제시·검토 절차)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약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. 다만,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,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.
- 3) (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)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.

마. 지식재산권 공동귀속

- 1)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2)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,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안전보장, 외교관계, 보안 및 정보보호 등)을 고려하여 주관기관,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바. SW산출물 반출 절차

- 1)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에서는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. 단,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,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로의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공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 -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「국가계약법」 제76조제1항제3호 및 「지방계약법」 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.

사.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

- 1)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56조(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)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다.

아.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

- 1)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,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.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

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.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.

- 2)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,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(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), 사업방법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
자. SW사업 영향평가

- 1) 본 사업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5조,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.

-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“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” 첨부

차. 기타사항

- 1)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사항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완점,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시 가능하다.
- 2)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 하였으므로,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·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.